

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[별표 4] <개정 2026. 1. 1>

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을
(제46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직종평균 취업률(3년 평균)					돌봄 서비스 훈련 과정	외국어 · 법정 직무 과정	K-디지털 크레딧
		70% 이상	60%이상 70%미만	50%이상 60%미만	40%이상 50%미만	40% 미만			
대 상	근로장려금 수급자	92.5%	87.5%	82.5%	77.5%	72.5%	10%	50%	90%
	일반훈련생	85%	75%	65%	55%	45%			
	국민취업지 원제도 Ⅱ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			70%	60%	50%			
	국민취업지 원제도 Ⅰ 유형 및 Ⅱ 유형 중 특정 계층	100%				80%	90%		

※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훈련공급 상위직종에 대해 10%p의 범위내에서 훈련비 감액 지원

1. **훈련성고가 높은 훈련기관에 대한 특례:**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을 적용
 - 1) 대상기간 중 종료된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10명 이상일 것
 - 2)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60% 이상일 것
 - 3)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전국 직종평균 취업률보다 5%p 이상 높을 것
2. **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:** 다음의 훈련생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에 대한 훈련비 지원율을 준용한다.
 - 1)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
 - 2)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 - 3) 출소(예정)자 등
 - 4) 장애인
 - 5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6)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(이하 ‘자립준비청년’)
 - 7) 한부모가족 해당자

- 8) 북한이탈주민
- 9) 아프간 특별기여자
- 10) 삭제
- 1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가정밖청소년